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1. 의결주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고, 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도록 하여, 제1심의 사물관할 기준과 항소심의 직분관할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이 규칙의 목적에 관한 제1조를 정비하고,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제4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3.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고등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삭제>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 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416